2-4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

□ 사업목적

- 재창업·채무조정 성실 이행·재도약 유망 소상공인 등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워
- □ 융자규모 : 2,500억원 내외
- □ 신청대상
 - (희망형)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* 또는 '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특별자금**을 지원받은 소상공인
 - * 단, 채무조정 중인 경우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
 - ** 긴급경영안정자금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, 이커머스 사태 특례보증부 대출(신용보증기금-기업은행)
 - (일반형) 재창업 준비단계, 재창업 초기단계, 채무조정 소상공인
 - (재창업 준비단계)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*을 수료한 소상공인
 - * 재창업교육(25h 이상): 금융·재무·세무 등 분야별 전문교육
 - (재창업 초기단계)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
 - ① 재창업 기업의 업력이 7년 미만이고.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
 -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(이사)가 폐업기업의 대표(이사)에 해당
 -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
 -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* 단,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
 - ②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, 업종전환(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)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
 - *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(매출액 과반수)이 되는 경우도 인정

- (채무조정)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
- ①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*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**
 - * 참여기관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(https://www.sbiz.or.kr)를 통해 별도 공지
 - **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하고,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(20h 이상)을 수료한 소상공인
- ② 소진공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고 3회차 이상 성실상환 소상공인
- ③ '24년 이후 소진공 대환대출을 지원받고 3회차 이상 성실상환 소상공인

□ 융자범위

○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
□ 융자조건

- 대출금리(변동금리): (희망형)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
 (일반형) 정책자금 기준금리 + 1.6%p
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- 대출한도* : (희망형) 1억원
 (일반형) 7천만원
 - *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잔액 합산
- ㅇ 융자방식 :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